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청소원이 오물수거작업중 빙판에 미끄러져 “뇌경색”이 진단된 경우

(87-56 호 87.3.16. 취소)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성명: 이 ○ ○

소속: (주)○○진개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주 문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이 87. 1.26.자 “이○○”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87. 1.26.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주)○○진개 소속 청소원으로서 86. 12.10. 11:00 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한양아파트 오물수거 작업중 쓰레기 삼테미를 운반하던중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퇴근하였고, 3일간 결근하면서 자가에서 요양중 85.12.15. 동아병원에 입원한 후 “뇌경색”이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3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담당주치의 소견이 “뇌경색증”이 올 수 있는 병명으로는 고혈압, 저혈압, 심장판막증 뇌혈관 기형, 외상성 등의 수많은 원인이 올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로 보아 저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며 자분의 소견은 “통상의학적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동환자의 경우 뒤로 넘어져 머리에 타박을 받아 뇌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키 어려운 업무상 요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작업 중 미끄러온 빙판 시멘트바닥에 넘어져 그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뇌경색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87. 3.4. 이○○)
2. 원처분청 의견서 (87.3.7.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87.2.28. 오○○)
4. 요양결정 결의서 (87.1.26.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5. 초진 소견서 (86.12.19. 동아병원장)
6. 소견서 (87.1.22. 동아병원장)
7. 재해조사 복명서 (86.12. 노동부 서울북부지방사무소장)
8. 문답서 (87.1.16. 진○○)
9. 진술서 (87.1.16. 이○○)
10. 위임장 (87.1.16. (주)○○진개 대표이사 양○○)
11. 근로계약서 (86.11.11. 양○○, 이○○)
12. 확인서 (87.3.14. (주)○○진개 대표이사 양○○)
13. 일일작업보고서 (86.11.11 ~ 12.10)
14. 기 타

이상의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86. 12.10. 도봉구 쌍문동 한양아파트 오물수거 작

업을 하다가 넘어진후 86.12.15. 동아병원에서 진단된 “뇌경색증”이 업무수행중 입은 외상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첫째 : 86.12.17. 자 동아병원 초진소견 상병명이 “뇌경색증”으로만 되어 있을 뿐, 외상을 인정할만한 상병명(뇌좌상 등)이 없고, 또 87. 1.22. 자 동병원 주치의(신경외과 전문의) 상병소견서에도 “환자의 상태로 보아, 저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서 기초질환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소작업중 뒤로 넘어져 그 외상이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는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청구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두부의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급격히 기초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 청구인의 업무상 과로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1.11. (주)○○진개에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후 매일 06:00 ~ 18:00 까지 4.5톤의 차량에 오물상차차 작업을 하여 왔으며 86.12. 1. 부터는 동절기 추위와 함께 청소작업량이 대폭 증가되어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또한 작업지역도 넓어져 06:00 ~ 21:00 까지 1일 2 ~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재자가 재해발생 이전에는 통상보다 육체적으로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요양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인간의 신체내에서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 등의 기초질환에 의하여 동맥의 내강이 막히면서 뇌혈관의 절대적 혈액순환 장애로서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86.12. 10. 뒤로 넘어질때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기초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증”이 자연발생 또는 자연경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조기에 발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부 예규 제 92호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 9 조 3 항 각호에 의거 보험법 제 3 조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뇌경색증”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